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과 결정 요인 연구

백선희* · 조성우**

본 연구는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 모색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특성과, 교육·보육비 지출수준 및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패널 데이터를 연구의 목적에 재구성하여 회귀분석과 경로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대부분은 핵가족이고, 1.26명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맞벌이 비율이 낮고,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소득이 낮은 편이다. 둘째, 교육·보육비 지출은 전체가구 평균 12.6만원, 이용자 가구평균 21.4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가구전체의 교육비는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셋째, 교육·보육비 지출에는 모의 학력, 직종, 자녀 수, 한 부모 여부, 근로소득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특히 어머니 관련 요인으로 경로분석을 시도해 보았을 때 어머니의 취업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와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어머니 관련 요인의 설명력이 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취학자녀를 위한 공보육·보육의 도입이나 취업모 자녀를 위한 지원 등의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육아는 결혼과 함께 가족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연적 행위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으로 육아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극복되어야 하는 여성문제의 하나이며, 경제 성장을 위해 여성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의 하나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미래노동력의 문제이며,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가 가져올 미래의 경제사회적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인구문제의 하나이다. 또한 아동의 권리 시대에 가족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세 접근의 공통점이란 육아문제는 사회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정책대상이라는 것이며, 차이점이라 하면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세부 내용이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우리나라에서 육아문제에 대한 접근은 빈곤문제의 일환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는 탁아사업에서 시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성정책의 성격을 띠다가, 2004년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편적인 아동복지사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육아문제는 대통령비서실에 의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부상되었는데, 그 배경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인구사회정책적 측면과, 현재의 여성노동력의 활용과 미래의 노동력의 개발이라는 경제정책적 측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육아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여성정책, 아동복지, 인구사회정책, 경제정책(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화두가 되었는데, 즉, 육아정책이 제 사회정책의 통합적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앞의 세 가지 측면보다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인구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측면의 중요성은 육아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 변화의 하나가 육아비용에 대한 사회적 분담이라는 정책 방향이다. 현 정부는 과거의 저소득층 중심의 영유아보육비나 유치원교육비의 지원에서 점차 그 대상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거나, 제한적이지만 다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여성부, 2004;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히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대표격인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해 정부는 매년 꾸준히 예산을 증액시켜 왔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¹⁾. 막대한 재정 투입의 배경은 이념적 차원에서의 공보육 또는 공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제문제, 인구 즉, 출산문제, 인적자본개발문제 등 구체적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영유아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등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재정지출이 급팽창하는 시점이지만,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사회적 분담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²⁾. 또한 육아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고 할 때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구의 육아비 지출 수준이나 가구의 능력, 육아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가 없는 것도 세부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특성과 육아비 지출의 수준, 그리고 육아비 지출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육아비의 사회적 분담방안 모색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0~5세의 자녀를 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만 0~5세 자녀가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에 미치는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어머니의 특성은 어떠한 경로로 교육·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영유아보육예산은 2002년 1천여억원에서 2003년 2천여억원, 2004년 4천여억원, 2005년 6천여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008년까지 약 1조원대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예산에 지방정부 보육예산과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예산을 포함한다면 2조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백선희, 2005).

2) 그 예로, 미취학 아동이라는 동일한 대상에게 만 5세 무상교육비 또는 보육비를 지원해주거나 저소득층에게 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해 줄 때도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미취학자녀는 만 0~5세 자녀로 정의하며, 미취학중인 만 6세 아동은 제외되었다. 둘째, 육아비용이란 만 0~5세 자녀가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으로 정의하며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의, 식, 주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문장의 맥락에 따라 정확한 표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교육·보육비’라는 표현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셋째, 교육·보육기관은 한국노동패널의 ‘사교육기관’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이 사용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의 범주에는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³⁾.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6차 패널은 제5차 패널과는 달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사교육기관 이용 여부와 전체 비용만을 묻고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는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그룹과외나 학습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나 학습지가 인적자본개발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관련이 있고 또한 가구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항목이니 만큼 가구 전체의 육아비 부담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I.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미취학자녀를 위한 육아비용에는 대표적으로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그리고 좀 더 확장하자면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범주의 육아비 지출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 국내에서는 김지경(2004a)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은 대개의 경우 사교육비에 대한 연구인데(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성립, 2002; 이승신, 2000; 박기백, 1998), 주로 초중고생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수준과 결정요인을 설명하지 못한다(김지경, 2003).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외 유치원, 선교원, 복지관 등의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분석하고 있지만, 각각의 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가구당 육아비 지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서문희·임유경·박애리, 2002 참고).

선행연구를 육아비 지출 수준과 관련된 연구, 육아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육아비의 사회적 분담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육아비 지출수준과 관련하여 가구를 준거로 육아비를 산출해낸 연구는 제 5차(2002)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김지경(2004)의 연구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비용은 영아의 경우 21.2만원, 유아의 경우 16.0만원이며 전체 평균 15.6만원이다. 기관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출하자면 유치원이 23.3만원, 어린이집이 18.9만원, 학원이 17.0만원 수준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2002년 기준),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분석한 서문

3) 이외 방과후교내 보충학습, 방과후교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만 0~5세의 자녀는 구조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논의에서 제외한다.

회 외(2002)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총 보육비용⁴⁾은 만 0~2세의 영아가 18.7만원 만 3~5세의 유아가 15.6만원, 영유아 전체 평균이 16.3만원이라고 산출하고 있으며 이외 유치원은 15.9만원, 선교원 12.5만원, 복지관 4.5만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2002년 기준). 이 연구의 특징은 적정비용과 추가 부담 가능 비용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인데, 적정 비용은 영아 평균 10.9만원, 유아 8.7만원, 전체 9.2만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면 추가 비용을 낼 의사가 있다고 하는 응답자가 영아 44.4%, 유아 35.1%, 영유아 37.0%이었다.

가구의 육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하여 김지경은 2004(a)년의 자녀의 교육 및 보육비(학원,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 지출에 거주지역, 이용시설 종류, 어머니 연령, 가구원 수, 가구소득 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그의 또 다른 연구(2004b)에서는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에는 자녀의 연령,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기관이용과 비용지출의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03년도의 사교육비(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개입·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교실) 지출에는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가구소득, 거주지역, 가족형태, 사교육이용자 유형⁵⁾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서문희 외(2002)의 실태조사 보고서는 단순 정보만 제공할 뿐 결정요인을 다루지 않으나, 기술통계상으로 볼 때 자녀의 연령, 가구소득, 이용시설, 거주지역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육아비의 사회적 부담과 관련하여 백선희(2000, 2001, 2004)의 연구는 육아의 사회화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형평성, 접근성 있는 사회적 부담방향을 제시하고, 변용찬·서문희·이상현·임유경(2001)의 연구도 보육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시설중심 지원에서 아동중심 지원으로의 보육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은 가구의 육아비를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백선희,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0~5세의 미취학자녀에 집중하여⁶⁾의 가구의 육아비 지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교육·보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뿐만 아니라 간접적 요인까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2. 육아비용의 사회적 부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육아비용의 사회적 부담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보육정책의 복합적 기능만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다룬 논문은 부재하지만, 일본에서 있었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원조에 관한 논쟁과, 현재 보육정책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연관시켜 여섯 가지 이론을 소

4) 총보육비용에는 보육료와 보육료 이외 현장학습비, 교재교구비, 특기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순수 보육료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영아 15.8만원, 유아 12.3만원, 영유아 전체 평균이 13.1만원이다.

5) 사교육만을 이용하는지, 사교육과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함께 이용하는지에 대한 구분이다.

6) 김지경의 2004(a)년도 연구는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그 비용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주제와 유사하나, 그의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다루고 있어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며, 본 연구가 가구의 육아비 지출에 관심을 갖는 반면 그의 연구는 자녀 1인당 지출비용에 초점을 두는 등의 차이가 있다.

개하고, 이후 결론에서 육아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론에 근거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의 논쟁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육아에 대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자조주의와 국가의존주의, 그리고 아동보호론이다(노자와 마사코, 1995 참고). 먼저, 요사노아끼코(與謝野晶子, 1984)는 양육은 서로 자립한 부부의 개인적인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자조주의를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사회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원칙 및 기본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개인의 확립이야말로 사회(국가)형성의 기초이고 국가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들 자신의 물질적 생활을 물론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유지할 정도의 경제적 보장의 확신이 있고, 그만한 재력을 저축할 때까지 기다려서 결혼하고 분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사노 아끼코의 주장이 개인주의와 여성의 자립자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히라쓰카 라이쥬(平塚雷鳥, 1984)는 성역할 분담을 강조한 국가의존주의를 주장한다. 그는 여성이 스스로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여성의 자유로운 권리이지만 그것은 현재의 아동의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미래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아동이 어머니의 주의를 가장 필요로 하는 몇 년간은 가정 밖의 노동을 중지하고 그 동안 사회가 교육비를 지급하여 어머니를 육아에 전념하게 함과 동시에 남성에게 생활을 의존해야만 하는 굴욕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의 양육과 교육은 사회의 안녕과 행복, 국가의 진보와 발전에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서 국고보조의 확대를 요구한다. 자조주의와 국가의존주의의 극단적 성향과는 달리 크라하시 소우조(倉橋惣三, 1927)의 아동보호론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한계 등을 인식하면서 기본적 아동보호는 가정 각자의 임무이고 단지 기능상 사회공동의 편의를 이용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하면서 아동의 자연권을 존중하고, 인간적 존엄과 개성, 자유를 잃지 않는 사회적 보호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사회적 동기와 사회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기능을 중요시 한다. 앞의 두 입장은 현대에서의 육아비용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외 아동권리론과 페미니즘, 인적자원개발론을 바탕으로 육아의 사회적 분담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아동권리론을 아동권리조약(1989)에 따라 설명하자면 양육 및 발달의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는 부모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수행할 때에 적당한 원조를 해주고, 아동의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국가의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은 아동권의 보장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자녀양육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페미니즘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극복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이다(조성숙, 2002; 조정문·장상희, 2001; 한국가족관계학회, 2002). 여성의 노동력 재생산 역할, 즉 자녀출산, 양육 및 사회화에 대한 여성의 책임은 현대 산업사회의 성별 분업을 정당화시키는 주요 이유가 된다. 벤스톤(1969)은 여성이 육아를 포함하여 힘든 가사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여성이 노동력으로 진입하는 것은 해방으로 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길일 것이라고 말한다. 가정내의 노동이 계속 사적 생산의 문제로 남아

있고 여성의 책임인 한 여성들은 단지 이중의 노동부담을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Rosemarie Putnam Tong, 1998). 조성숙(2002)은 결혼과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도리로 규정하는 모성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민주화, 남성과 사회의 자녀양육 동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육아비용의 사회적 부담은 페미니즘 입장에서 육아 또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곧 양성평등의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인적자본론의 입장에서도 육아비용의 사회적 부담의 타당성이 있다. 인적자본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양적 측면은 인구의 수를 강조한다면, 질적 측면은 교육을 강조한다.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교육은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교육에 대해 경제학적 접근을 하자면, 교육은 소비로서 현재 또는 일시적인 만족을 갖게 하는 측면과 투자로서 미래 또는 장래에 만족을 갖게 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으며, 교육투자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가사회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게 하는 양면적 수익을 갖고 있다(정일환·김정희·주동범, 2002). 육아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미래 사회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투자적 개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육사업을 비롯한 육아정책에 대해 정책적 관심과 재정 투자가 집중되는 개입의 배경을 살펴보면 위의 네 이론과 비교적 잘 연결되고 있다. 첫째, 사회문제로서의 육아문제에 대한 개입이다. 백선희(2000)는 육아 문제가 국가 개입을 필요로 하는 보편적인 사회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비용분담을 주장 하였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네 이론 중 아동보호론에 가깝다. 둘째,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으로서의 개입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성별 분업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던 육아문제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페미니즘의 문제의식과 동일하다. 셋째, 아동권리의 보장적 측면에서의 개입이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아동의 권리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보편주의적 보육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로서의 개입이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는 미래사회 존립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육아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하는데⁷⁾, 이것은 인적자본론의 주제 의식과 유사하다.

세계의 각 국가가 어떠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든, 육아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위해 많은 재정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재정 운영은 달라질 수 있지만, OECD 많은 국가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5~30%를 부담하고 있다(OECD, 2001; 나정·장영숙, 2002).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 덴마크, 스웨덴, 일본 등 각 국가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대개 소득과 연동되어 있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가구의 수입규모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며, 스웨덴, 일본 등은 지역 특성까지를 고려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만 4세 이상 아동에게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의 준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득과 연계시켜 보육·교육비를 30~100% 지원하고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수혜대상자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수준, 전체 0~5세 아동의 약 1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가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할 때 향후 누구에게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7)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최근 [육아지원정책방안]이라는 국정과제의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책 과제가 된다.

<표 1> 국가별 부모의 영유아보육·교육의 비용 부담

국가명	0~3세	3~6세
호 주	수입에 따라 다양(보통 수입의 9%)	주가 지원하는 공립 예비학급 4세는 무상
덴마크	시와 수입에 따라 다양 (최대 33% 부담)	좌동
핀란드	수입에 따라 다양하나 보통 10~15% 부담	좌동
이탈리아	보통 35% 부담(수입의 12%)	공립은 무상(식비 제외), 사립은 다양
네덜란드	수입에 따라 다양 보통 44% 부담(가족수입의 6~21%)	4세부터 무상
포르투갈	가족수입의 11%	공립은 무상
스웨덴	시와 수입에 따라 다양(2~20% 부담)	4세 이상 무상
영 국	수입이나 세금 수준에 따라 다양(부모 30~60% 부담)	4세부터 무상(3세 무상도 증가)
일 본	지역과 수입에 따라 다양	좌동
한 국	수입에 따라 다양, 일정소득이하의 경우 보육시설 30~100%, 유치원 40~100%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	좌동, 단 5세 아동에게 무상교육·보육

자료 : OECD, 2001. Starting Strong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나정, 장영숙,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동향], 양서원, 2002
 일본 후생성, [보육백서], 2004
 여성부, 2004, “2005년도에 달라지는 보육정책 :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인적자원부(2004), 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단가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 6월에서 1998년 9월까지 실시한 『한국노동패널(Korea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6차년도(2003년)의 가구조사 자료와 개인 가구원조사 자료이다⁸⁾.

분석 대상은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의 병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먼저 KLIPS 6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 4,592가구 중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713가구를 선별하였다. 교육·보육비와 관련된 부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가구의 부모 자료를 개인용 자료에서 찾아 병합한 후 자료의 정제과정을 거친 590가구를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8) 한국노동패널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준조사구(21,675)를 모집단으로 하고 그 중 951가구를 노동패널조사대상자로 하고 있다.

2.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미취학 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인은 부모요인, 가족요인, 자녀요인, 경제요인, 지역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범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변인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6차 KLIPS 자료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본 논문의 네 가지 연구 문제에 맞추어 첫째, 만 5세 자녀가 있는 가족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고, 둘째, 교육·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셋째, 주요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그에 적합한 변인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구 분	변 인		분 석			출 처	
			1단계 기술분석	2단계 회귀분석	3단계 경로분석		
독립변수	부모요인	부모의 연령	○	-	○(모)	개인용 자료	
		부모의 학력	○	○	○(모)		
		맞벌이 여부	○	○	○(모)		
		모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	○	-	-		
		취업모의 취업직종	○	○	-		
		취업모의 직무만족	○	○	-		
	가족요인	가족 구조	○	○	-	가구용 자료	
		가족 규모	○	-	-		
	자녀요인	자녀의 수	○	-	-	가구용 자료	
		자녀의 연령	○	○	○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	○		
	경제요인	가구 총소득	○	○	-	가구용 자료	
		가구 총근로소득(세후)	○	○	-		
		모의 근로소득	○	○	○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	○	-		
		사교육비 지출비	○	○	○		
		교육비의 가계부담 정도	○	○	-		
	지역요인	거주지역	○	○	-	가구용 자료	
	종속변수	육아비용	만 0~5세 자녀의 교육·보육비 총액	○	○	○	가구용 자료

IV. 분석 결과

1. 미취학자녀 가구의 특성과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

가. 부모 및 가족 특성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의 부모 및 가족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부의 나이는 평균 34.6세, 모의 나이는 평균 31.8세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부모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중반이다. 부모의 학력은 부의 경우 대졸 이상이 53.5%, 모는 43.5%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편이다.

<표 3> 부모의 학력

(단위 : 명, %)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계
부	24 (4.1)	247 (42.4)	277 (47.5)	35 (6.0)	583 (100.0)
모	20 (3.5)	304 (53.1)	241 (42.1)	8 (1.4)	573 (100.0)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94.9%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이고, 조부모와 3세대를 이루는 경우는 전체의 3.4%에 불과해 핵가족이 지배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2세대 가족 중 2.4%는 한부모 가구이다. 가족 규모는 평균 3.84명이지만 자녀가 어린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의 가능성이 있어 출산이 완료된 시점의 평균 가구원 수는 이보다 상회할 수 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고등학생(재수생 포함)이하 자녀 수는 평균 1.69명, 만 5세 이하 자녀는 1.26명이다.

<표 4> 가족 구조

(단위 : 가구, %)

한부모+자녀	양부모+자녀	조부모+(편)부모+자녀	조부모+자녀	부모+자녀+기타 친지	계
14 (2.4)	546 (92.5)	20 (3.4)	1 (0.2)	9 (1.5)	590 (100.0)

<표 5> 가구 당 미취학 자녀 수

(단위 : 가구,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계	평균
만5세 이하	-	441 (74.7)	141 (23.9)	8 (1.4)	-	590 (100.0)	1.26명
만2세 이하	296(50.2)	274 (46.4)	19 (3.2)	1(0.2)	-	590 (100.0)	1.07명

나. 어머니의 경제활동

응답가구의 22.0%가 맞벌이이고 취업모의 75.4%는 종일제 노동을 하고 있다. 모의 취업직종은 사무직이 24.8%로 가장 많지만, 전문직(18.4%)과 기술직 및 준전문직(14.2%)의 비율도 서비스직, 생산직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취업모의 소득은 평균 138.9만원인데 반일제 노동의 경우는 57.2만원으로 종일제 노동의 경우인 151.2만원의 37.8%수준이다. 취업모 전체의 30.1%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36.2%는 100~200만원의 소득을, 그리고 33.6%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 취업모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불만족(7.1%)보다는 만족(39.0%)의 비율이 높다.

<표 6> 취업여성의 노동참여 형태

(단위: 명, %)

전업주부	반일제 노동	종일제 노동	계
432 (75.4)	25 (4.4)	116 (20.2)	573 (100.0)

비고: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22.0%임.

반일제 또는 종일제 노동의 비율(24.6%)이 맞벌이 비율보다 많은 것은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표 7> 취업모의 취업 직종

(단위: 명, %)

전문직	기술직·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계
26 (18.4)	20 (14.2)	35 (24.8)	10 (7.1)	16 (11.3)	13 (9.2)	11 (7.8)	10 (7.1)	141 (100.0)

<표 8> 취업모의 근로소득 분포

(단위: 명,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평균
반일제 노동	14 (82.4)	1 (5.9)	1 (5.9)	1 (5.9)	0 (5.9)	17 (100.0)	57.2만원
종일제 노동	34 (30.1)	17 (15.0)	24 (21.2)	34 (30.1)	4 (3.5)	113 (100.0)	151.2만원
계	48 (36.9)	18 (13.8)	25 (19.2)	35 (26.9)	4 (3.1)	130 (100.0)	138.9만원

<표 9> 취업모의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2 (1.4)	53 (37.6)	76 (53.9)	9 (6.4)	1 (0.7)	141 (100.0)

다. 가구 소득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총 소득은 평균 244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인 300만원(2004년 4/4분기 기준, 통계청, 2004)에 미달한다. 소득 구간으로 볼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법정 및 차상위빈곤층에 해당하는 150만원 미만인 23.7%,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2/3이하 수준인 150~200만원 미만인 21.7%, 200~300만원 미만인 28.0%이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인 월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6.6%이다. 가구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2.2%인 평균 225.1만원 이어서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여유 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하고, 43.3%는 어려운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10> 가구 총 소득 및 근로소득 분포

(단위 : 가구,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평균
가구총소득	53 (9.0)	87 (14.7)	128 (21.7)	165 (28.0)	157 (26.6)	590 (100.0)	244.9만원
총근로소득	57 (9.7)	95 (16.1)	129 (21.9)	166 (28.1)	143 (24.2)	590 (100.0)	225.1만원

<표 11>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가구, %)

매우 여유 있음	여유 있는 편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1 (0.2)	31 (5.3)	303 (51.4)	162 (27.5)	93 (15.8)	3.53

라.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와 지출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은 연령별 평균 51.9%로 나타났는데, 이용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승해 만 0세 자녀의 경우는 6.9%에 불과하지만 만 5세 자녀의 기관 이용률은 91.8%로 매우 높다. 연령별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만 0세가 45만원으로 가장 많고 만 3세에는 가장 낮은 13.9만원이다. 만 5세의 지출비용이 4세에 비해 적은 이유는 정부의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12> 연령별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및 지출 비용

(단위:명, 가구, 만원, %)

구분	이용함	이용안함	무응답	계	해당가구	교육·보육비 (이용자 기준)
만 0세 자녀	4 (6.9)	53 (91.4)	0 (0.0)	58 (100.0)	56 (9.5)	45.0
만 1세 자녀	13 (12.0)	89 (82.4)	6 (5.6)	108 (100.0)	104 (17.6)	22.9
만 2세 자녀	38 (25.7)	104 (70.3)	6 (4.1)	148 (100.0)	145 (24.6)	18.8
만 3세 자녀	82 (55.4)	64 (43.2)	2 (1.4)	148 (100.0)	147 (24.9)	13.9
만 4세 자녀	116 (84.1)	19 (13.8)	3 (2.2)	138 (100.0)	136 (23.1)	18.2
만 5세 자녀	134 (91.8)	9 (6.2)	1 (0.7)	146 (100.0)	142 (24.1)	17.2
계	387 (51.9)	338(45.3)	18 (2.4)	746 (100.0)	590(100.0)	-

비고: 만 0세 자녀의 교육·보육비의 표준편차는 타 연령에 비해 크다.

전체 가구의 교육·보육비는 월평균 12.6만원, 자녀 1인당은 10.1만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근로소득대비 6.4%, 총소득대비 6.6%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교육·보육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이 21.4만원, 자녀 1인당 1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용은 근로소득대비 11.0%, 총소득대비 11.3%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표 13>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 비용

(단위:명, 가구, 만원, %)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가구	가구당 월평균	590	0.00	80.00	12.5559	14.9350
	자녀1인당 월평균	590	0.00	70.00	10.0768	12.2278
	근로소득대비	585	0.00	92.31	6.4223	9.8265
	총소득대비	589	0.00	230.00	6.6001	13.3788
교육· 보육기관 이용가구	가구당 월평균	345	0.00	80.00	21.4493	13.8099
	자녀1인당 월평균	345	0.00	70.00	17.2097	11.5302
	근로소득대비	340	0.00	92.31	11.0417	10.7340
	총소득대비	344	0.00	230.00	11.2924	15.9290

소득수준별 미취학자녀의 가구당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4인 가족 법정 빈곤층 수준인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16.4만원을, 차상위 빈곤층 수준인 15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14.9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이상 소득계층의 평균 교육·보육비용은 2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만원 미만 계층에서 31.5%로 매우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다가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비율이 10%이하로 감소한다.

<표 14> 소득수준별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 및 근로소득 대비율

(단위:명, 가구, 만원, %)

구분	가구당 월평균 교육·보육비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교육·보육비 비중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00만원 미만	28	16.3571	12.1996	25	31.4887	24.8079
100~150만원	41	14.9024	9.0300	41	12.9525	8.0830
150~200만원	62	20.4194	13.6268	61	12.1210	7.6635
200~300만원	97	20.3402	12.3481	97	8.8930	5.3431
300만원 이상	117	26.4274	15.1977	116	7.1889	4.7261
합계	345	21.4493	13.8099	340	11.0417	10.7340

전체 가구의 42.0%는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를 지출하지 않으며, 15.8%는 15만원 미만을, 28.3%는 15~30만원미만을 지출하고 13.9%는 30만원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를 포함한 가구의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12.6만원보다 7.4만원이 많은 20.0만원인데 34.2%는 전혀 지출하지 않는데 비해 34.8%는 30만원 미만, 31.0%는 3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비와 학교등록금 등의 공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출은 가계부담의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표 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응답가구의 34.1%가 가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이 교육비라고 지적한다.

<표 15>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및 가구 전체 사교육비의 분포

(단위:가구, %)

구분	0원	15만원 미만	15~30만원 미만	30~45만원 미만	45만원 이상	전체	평균
미취학자녀 교육·보육비	248 (42.0)	93 (15.8)	167 (28.3)	51 (8.6)	31 (5.3)	590 (100.0)	12.6만원
전체사교육비	202 (34.2)	66 (11.2)	139 (23.6)	102 (17.3)	81 (13.7)	590 (100.0)	20.0만원

비고: 총사교육비에는 가구원 전체의 학원비, 과외비 등을 포함.

<표 16>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중복응답)

(단위:가구, %)

식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부채 상환	계
112 (20.1)	14 (2.5)	190 (34.1)	66 (11.8)	176 (31.5)	558 (100.0)

3.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 결정 요인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주요 변인들이 교육·보육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일부 변인(모의 취업상태, 가족규모 등)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들 변수를 제거하고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질적 변인은 더미변수로 만들어 처리하였다. 부모의 학력에서는 ‘고졸이하’가 준거집단이며, 모의 직업에서는 ‘무직’이 준거집단임을 밝혀둔다.

전체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p=0.0$). 각 요인별로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에서는 부의 학력은 교육·보육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 소유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직종을 보면, 전업주부와 비교해서 전문직이 교육·보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직무만족도는 교육·보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가족요인을 살펴보면, 한 부모 가족일수록 교육·보육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부모 가족이 양부모 가족보다 교육·보육비 지출을 꺼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구조는 실제 교육·보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요인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요인의 각 변인들은 모두 교육·보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취학자녀의 수(만 6세~만 18세의 자녀)와 만 5세 이하의 자녀 수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취학자녀의 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만 5세 미만의 자녀의 수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취학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구에서 소요되는 교육·보육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 5세미만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본 결과는 설명하고 있다. 경제요인이 교육·보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근로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육아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구생활비 중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육아비의 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육아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나 현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육아비 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거주지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미취학 자녀의 교육·보육비에 대체로 부모나 가족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동과 경제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력

결정요인			B	S.E.	sigtBeta	
상수			-13.534	4.210	0.001-3.214	
부모 요인	부의 학력(대졸)	0.921	0.827	0.031	1.114	0.266
	부의 학력(대학원 이상)	-2.709	1.685	-0.043	-1.608	0.108
	모의 학력(대졸)	1.768	0.851	0.058	2.078*	0.038
	모의 학력(대학원 이상)	1.245	3.061	0.010	0.407	0.684
	모의 직업(전문직)	3.238	1.392	0.058	2.326*	0.020
	모의 직업(사무직)	2.314	1.514	0.037	1.528	0.127
	모의 직업(서비스직)	0.550	2.739	0.005	0.201	0.841
	모의 직업(판매직)	-0.792	2.144	-0.009	-0.369	0.712
	모의 직업(생산 및 단순노무직)	1.687	1.637	0.026	1.031	0.303
	모의 직무만족도	0.622	1.177	0.013	0.528	0.598
가족 요인	한부모 가족여부	-3.754	1.899	-0.048	-1.977*	0.049
	가족구조(0=2세대가구,1=3세대가구)	0.409	1.984	0.005	0.206	0.837
아동 요인	취학자녀의 수(만6~18세)	-3.414	0.684	-0.151	-4.989**	0.000
	만0~5세 자녀수	2.547	0.818	0.080	3.114**	0.002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10.811	0.979	0.356	11.038**	0.000
경제 요인	가구 총소득(월)	0.001	0.003	0.016	0.406	0.685
	가구 총근로소득(월)	0.017	0.005	0.159	3.703**	0.000
	모의 소득(월)	0.038	0.012	0.094	3.239**	0.001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여부	-0.524	0.795	-0.015	-0.659	0.510
	현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0.435	0.458	-0.024	-0.949	0.343
	교육·보육비총액/근로소득(월)	49.350	4.660	0.327	10.590**	0.000
	생활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	30.983	4.441	0.234	6.977**	0.000
	전체 교육비 지출의 부담 정도	1.574	0.821	0.049	1.918	0.056
지역 요인	거주지: 대도시 지역 여부	-0.315	0.690	-0.011	-0.456	0.648

4. 어머니 요인이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에 미치는 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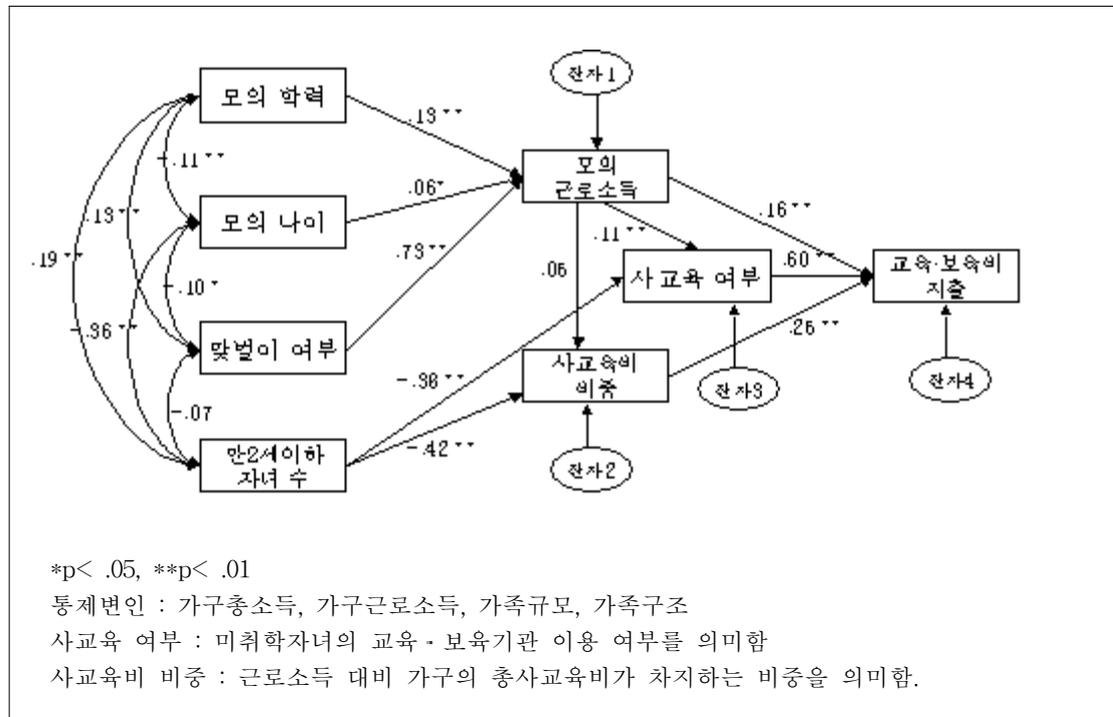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요인이 교육·보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주요 분석기법으로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는 회귀모형의 확장형인 경로모형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와 연구자의 경험적 판단을 통해 경로모형을 만든 후, 이것이 실제 자료와 얼마나 적합한지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초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적합도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모형을 크게 수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유모수를 추가하여 모형과 현실 자료간의 적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정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각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GFI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하나, 그 외의 적합도 지수들은 좋은 편은 아니다. 초기모형이 비록 모형과 자료간의 적합도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나,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적합도를 개선할 수 있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가 제시된다. 수정지수를 활용해서 수정모형을 개발하였다.

<표 18> 초기모형의 적합도 결과

적합도 종류	카이자승	자유도	GFI	NFI	CFI	RMSEA
적합도 크기	201.080	12	0.924	0.867	0.873	0.166

<그림 1> 초기모형의 경로도



분석결과, ‘모의 근로소득’->‘사교육비 비중’의 경로를 고정시키고, ‘사교육비 비중’의 잔여분(잔차2)과 ‘사교육 여부’ 즉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의 잔여분(잔차3)을 자유모수로 전환시켜주니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카이자승의 크기가 초기모형과 비교해서 많이 낮아졌으며, GFI=0.968, NFI=0.947, CFI=0.954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RMSEA=0.100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지수 결과를 참고해 볼 때 모형을 수렴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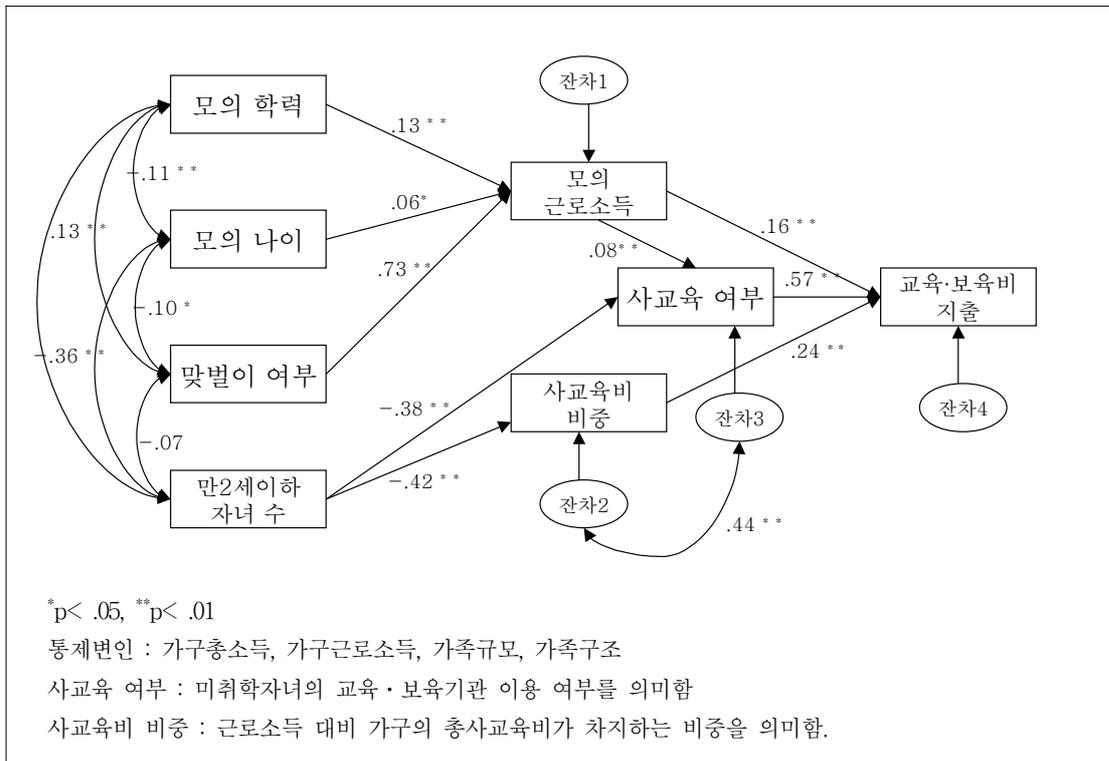
<표 19> 수정모형의 적합도 결과

적합도 종류	카이자승	자유도	GFI	NFI	CFI	RMSEA
적합도 크기	80.408	12	0.968	0.947	0.954	0.100

다음으로는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본 경로모형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 및 연구자의 경험적 판단에 근거해서 교육·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총소득, 가구근로소득, 가족규모, 가족구조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모든 경로계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내생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계수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나이, 맞벌이 여부는 모두 어머니의 근로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다시 직접적으로는 교육·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사교육 여부를 경유해서 교육·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어머니의 학력, 나이 등의 변인과 교육·보육비 지출을 매개하는 것을 본 결과는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어머니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얼마나 자녀로 두었는지도 교육·보육비 지출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만 2세미만의 자녀 수는 사교육 여부와 사교육비 비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이들 변인은 다시 교육·보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모형을 통해 어머니의 근로소득 변화량의 약 57%가 어머니 요인을 통해, 교육·보육비 지출 변화량의 약 60%가 관련 선행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육·보육비 지출에 대한 어머니 요인 중심의 경로모형이 가지는 설명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수정모형의 경로도



<표 20> 변인간 경로계수 및 R²

경로	경로계수		R ²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모의 학력 -> 모의 근로소득	15.723(3.309)**	0.132	0.568
모의 나이 -> 모의 근로소득	1.019(0.472)*	0.060	
맞벌이 여부 -> 모의 근로소득	120.635(4.601)**	0.729	
만 2세 이하 자녀 수 -> 사교육 비중	-0.085(0.008)**	-0.424	0.180
만 2세 이하 자녀 수 -> 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0.332(0.033)**	-0.381	0.156
모의 근로소득 ->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0.001(0.000)**	0.084	
모의 근로소득 -> 교육·보육비 지출	0.034(0.006)**	0.156	0.592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교육·보육비 지출	17.478(0.967)**	0.573	
사교육비 비중 -> 교육·보육비 지출	31.691(4.174)**	0.240	

<표 21>은 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크기를 제시한 것이다. 경로모형은 변인간의 직접적 효과만 분석하는 회귀모형과 달리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모두를 분석할 수 있다.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할 때,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들 간의 인과관계의 속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은 크진 않지만, 근로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나이는 내생변인들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여부는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근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자녀 수도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만 2세 이하의 자녀수는 사교육 관련 변인을 경유해서 교육·보육비 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총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최종 내생변인인 교육·보육비 지출에 사교육 관련 변인과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변인 간 효과분해

경로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모의 학력 -> 모의 근로소득	15.723	0.132	-	-	15.723	0.132
모의 학력 ->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	0.009	0.011	0.009	0.011
모의 학력 -> 교육?보육비 지출	-	-	0.698	0.027	0.698	0.027
모의 나이 -> 모의 근로소득	1.019	0.060	-	-	1.019	0.060
모의 나이 ->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	0.001	0.005	0.001	0.005
모의 나이 -> 교육?보육비 지출	-	-	0.045	0.012	0.045	0.012
맞벌이 여부 -> 모의 근로소득	120.635	0.729	-	-	120.635	0.729
맞벌이 여부 -> 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	-	0.073	0.062	0.073	0.062
맞벌이 여부 -> 교육·보육비 지출	-	-	5.355	0.149	5.355	0.149
만 2세 이하 자녀 수-> 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0.332	-0.381	-	-	-0.332	-0.381
만 2세 이하 자녀 수 -> 사교육 비중	-0.085	-0.424	-	-	-0.085	-0.424
만 2세 이하 자녀 수 -> 교육·보육비 지출	-	-	-8.495	-0.320	-8.495	-0.320
모의 근로소득->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0.001	0.084	-	-	0.001	0.084
모의 근로소득 -> 교육?보육비 지출	0.034	0.156	0.011	0.048	0.044	0.204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교육·보육비 지출	17.478	0.573	-	-	17.478	0.573
사교육비 비중 -> 교육·보육비 지출	31.691	0.240	-	-	31.691	0.240

I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육아의 사회화를 위해 그 비용의 사회적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지하면서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특성과,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 그리고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 단위 육아비(교육·보육비)를 산출하여 가구의 부담의 크기를 산출하고, 어머니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이 논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의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특성을 보면, 부모의 평균 연령 30대로, 약 50% 정도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3.8명, 만 5세 이하의 자녀 1.3명을 포함하여 평균 1.7명의 자녀를 둔 2세대의 핵가족으로 구성되었다. 맞벌이 비율은 22%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약 50%와 비교할 때 사회적 참여비율이 낮지만, 취업모의 약 80%는 전문직, 기술직·준전문직, 사무직을 중심으로 종일제 노동을 하며 월평균 139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가구의 총소득은 245만원으로 주로 근로소득(225만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340만원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낮고, 주관적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경우가 핵가족이기 때문에 부부중심으로 육아를 해결해야 하지만 여성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여성이 그 부담을 안고 있다. 생애주기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결혼초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아비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육아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

된다면 여성의 사회참여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은 51.9%인데, 이것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만 5세 자녀의 이용률은 91.8%로 매우 높다. 교육·보육비 지출은 월평균 12.6만원이지만, 실제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21.4만원이다. 이것은 이용가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소득대비 11.0%에 해당하는 지출인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를 포함한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항목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육아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어려우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육아비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의 학력, 모의 전문직 여부, 만 5세 이하 자녀의 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가구 근로소득, 모의 소득, 근로소득대비 교육·보육비의 비중, 생활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영향을 미치고, 한부모 가족 여부, 취학자녀의 수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의 학력이나 가족구조, 총소득,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여부, 현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가구전체 교육비, 거주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육·보육비의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공교육을 받게 되는 취학 자녀가 있을 때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지역이나 주관적 경제의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미취학자녀를 위한 지출은 교육·보육의 사회화가 안 될수록 개별 가족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데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에 대한 욕구는 거주지역과 상관없는 보편적 욕구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든 아동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어머니 관련 요인이 교육·보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을 때, 모의 학력과 나이, 취업 여부가 모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근로소득은 교육·보육기관 이용과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 2세 이하 자녀의 수는 교육·보육기관 이용과 가구의 사교육비에 부적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와 생활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은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모의 근로소득과 사교육비의 비중이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취업이 교육·보육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으로 미취학자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가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맞벌이 가구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해 육아비에 대한 사회적 분담 방안을 제안하자면, 아동보호론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 과도한 육아비 부담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대비 육아비 지출의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는 가정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론의 입장에서 부모가 맞벌이이든 그렇지 않든, 자녀가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육아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가정에 있는 아

동까지를 고려한 보편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대상의 확대는 출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페미니즘 입장에서도 육아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모든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아를 둔 경우 높은 육아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과 일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렵게 하므로 취업모나 직업훈련생 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론의 입장에서 특히 만 5세 아동의 공교육을 현실화시키고, 점차적으로 만 4세 아동에게까지 확산시켜 개별 가구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적자원의 질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자경(2003),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 여부 및 비용의 결정 요인」, 『제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4a), 「자녀 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여성연구』 통권 제 67호.
- _____ (2004b),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8호, 대한가정학회.
- 나정 · 서문희 · 유희정 · 박기백(2003), 『영유아보육과 보육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 · 장영숙(2002),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동향』, 양서원.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육아지원정책 방안』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재정논집』, 제13집 제1호
- 백선희(2000), 「영유아보육비용 재정분담 구조의 현황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1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_____ (2001), 「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과 재정정책의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_____ (2004), 「보육료 차등지원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4.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36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_____ (2005),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 구조화- Burchardt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7-1호, 한국사회복지학회(게재 예정).
- 변용찬 · 서문희 · 이상현 · 임유경(2001),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 임유경 · 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립(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9호, 대한가정학회.
- 이승신(2000),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7호, 대한가정학회.
- 조성숙(2002),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 조정문 · 장상희(2001), 「가족사회학」, 아카넷.
- 정일환 · 김정희 · 주동범(2002),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 한국가족관계학회 편(2002), 「가족학 이론(개정판)」, 교문사.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Caroline Bird, 西岡公・木ゆり子 譯(1985), 『エイジレス人間の時代』, ABC出版 OECD(2001),
Starting Strong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Joreskorg, K. G. & Sorbom, D.(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Rosemarie Putnam Tong(1998), *Feminist Thought*, Westview Press, 이소영 역, 「페미니즘 사
상」, 한신문화사, 2000

野澤正子 著, 장영인 역(1995),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인간과 복지

與謝野晶子(1984), 「女子の徹底した獨立」, 香内信子篇集 解説, 『資料母性保護論争』, ドメス出版

倉橋三(1927), 『社會的兒童保護概論』 平塚雷鳥(1984), 『母性の主張について與謝野晶子氏に興ふる』,
香内信子篇集 解説, 『資料母性保護論争』, 메스出版

아동권리조약, 1989

교육인적자원부(2005), www.moe.go.kr

여성부(2004), www.moge.go.kr

통계청(2004), www.nso.go.kr